

【 2 】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8. 12. 2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애로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직권면직 요인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개정함(안 제10조 제1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해야 했던 강제 규정을 “명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1조)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이 종료된 때까지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 2)
- 휴직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 3)
- 근무 상한연령의 연장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
-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제2항)
-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제3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 신설 (부칙 제4항)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호 중 “6월이상”을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증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증인 별정직공무원 증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증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증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략)</p> <p>③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달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의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 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규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④〈삭제〉</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갈망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4.(현행과 같음)</p>	<p>제10조(직권면직) - - - - -</p> <p>- - - - -</p> <p>- - - - -</p> <p>1. - - - - - 양주군지방공무원법 도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 - - - -</p> <p>- - -</p> <p>2~4.(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생 락)	1~2.(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휴직기간) 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로 하다.
〈신 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증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브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듯하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시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문서 유통량 20% 줄이기 운동 다 함께 참여합시다"

경 기 도

13PP4
10-02
한국전자

문서 번호 44T-7017 수원시 권선구 애산로 3가 14번지 전화 (033) 7249-4034 (FAX: 249-2216)
자치행정과 과장 한영구 안사거북금당박장호 달당자 황수진
한국전자

문서 번호 자치 12100 - 2073

시행 일자 1998. 9. 25.

발 행처 달는곳찰즈

찰 주 증우(내부)과장

선결	총 3회	지
장		시
월	1998. 9. 25.	년
일		월
시간		시
수	증우(내부)과장	분
번호		제
처리과		장
담당자		률

제 목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일용등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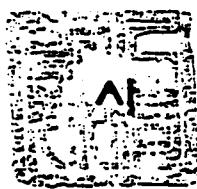
1. 행자부 은영 12100-451(98. 9. 17)호의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청년 출단죽할 지역공무원별 개정취지에 따라 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죽기기간까지로 하여, 꾸직제도동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원로 이비절률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일용등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을 제정과 같이 통보하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표준안에 의하여 해당 조례를 이작같이 개정·증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 문 일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일용등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전결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광역시(*특별시·도·시·군·자치구) 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
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
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
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일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권자
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증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③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협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직권면직 요인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로 개정함. (안 제10조 제1호).
-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 휴직을 명해야 했던 강제규정을 “명할 수 있다”의 일의규정으로 개정함. (안 제11조).
- 다. 병역의무를 펼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때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 한다는 규정 신설함. (안 제11조의 2).
- 라. 휴직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의 3).
- 마. 근무 상한연령의 연장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
- 바.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규정 신설. (부칙 제2항).

사.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 (부칙 제3항).

○ 1998년 12월 31일 종료

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
(부칙 제4항).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련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

○ 자치12100~2073('98. 9.25)호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통보공문 사본 : 별첨